

발행번호 : A45X526GT00001

지 급 보 증 서

(특정채무보증용)

수입
인지

2026 년 01 월 12 일

Wonderflow Support Pte. Ltd. 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(krshein.com)에서 선불식 통신판매하는 재화 등
(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제3자가 비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제외)을 구매하는 국내 소비자 중 신용카드를

보증처 : 제외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한 고객

보증인 (주) 한국 씨티은행중앙기업업무센터

귀하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과 뒷면 약관에 따라 지급을 보증합니다.

보증금액	금 일십삼억칠천일백만원 정
보증기일	2026년 01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
피보증 채무의 내용	채무자 명칭 : WONDERFLOW SUPPORT PTE. LTD. 주소 : 60 PAYA LEBAR ROAD, HEX08-53, PAYA LEBAR SQUARE, SINGAPORE 409051. 채무종류 -정약철회 기간 내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 환급금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-재화 등의 공급의무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 -구매한 재화 등의 배송 전 구매 취소로 인해 발생한 대금환급금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
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	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에게 다음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기일 만료일전에 이행청구할 수 있다. 1.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있는 때 2. 파산·화의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3. 피보증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
보증채무의 이행청구기간	주채무의 보증기일 경과후 2개월 이내에 귀하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이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.
특약사항	1. 보증처는 씨티그룹의 내부정책 및 관련 법률, 규정 등에 의해 거래금지 국가로 지정된 지역("거래금지지역")에 소재하지 않고, 어떠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("거래금지대상") (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)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, 국내 소비자에 한 합니다. 만약 보증처가 거래금지지역에 있는 자 혹은 거래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, 당행은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보증채무이행장	2. 다수의 보증처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은행은 그 이행청구가 은행에 접수된 순서대로 보증채무를 이행합니다. 만약 다수 보증처가 보증금액을 초과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에 은행은 가능한 보증금액을 범위에 공탁함으로써 지급보증 채무의 이행에 갈음합니다.

청구금액 은

위 청구금에

명칭

채권자

주소

(인)

년 월 일

<보증서 발급조회 안내>

*인터넷뱅킹 (주)한국씨티은행 citibank.co.kr -> 기업고객 인터넷뱅킹 (cat-i) -> 지급보증서 발급조회



대한민국정부
The Government of
the Republic of Korea

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

(Revenue Stamp of Gc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)

고 유 번 호 : 2602705-004123477

(Certificate No.)

수 입 인 지 금 액 : 10,000원

(Stamp Duty Amount)

성 명 (상 호) : 한국씨티은행

(N a m e)

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1028114717

(Registration No.)

발 급 처 : 한국씨티은행

(Stamping Channel)

발 급 일 자 : 2026.01.1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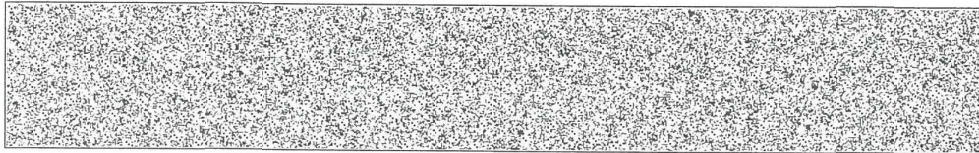
(Certificate Issued Date)

재 정 경 제 부 장 관

(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)



*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(copy)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,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

< 사용 방법 >

* 전자수입인지는 1회 출력만 가능하며(프린터 시험인쇄 요망), 제출서류 1건의 과세금액을 1매로 첨부(添附)하여 사용합니다.

< 전자적 소인 처리 방법 >

*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,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.

(접수한 공무원의 전자적 소인처리 절차는 gov.e-revenuestamp.kr에서 수행)

*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인(私人)간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경우, www.e-revenuestamp.or.kr 에서 전자적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"사용"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정한 재사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주의사항 : 소인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사용 및 환매가 불가하오니 신중한 소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.

< 환매 방법 >

*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구입처에 환매(액면금액의 97% 상당액)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및 금융회사(은행 등)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.